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제19호
----------	-------------

제출연월일 2007. 2. 28.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 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함
- 나.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이며, 기 지원되고 있는 생활체육 단체 및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의 목적기술(안 제1조)
- 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 의무 부여(안 제2조)
- 다.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규정(안 제3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 라. 기 타
 - 1) 조례(안) : 따로 붙임
 - 2) 입법예고(2006. 12. 8 ~ 12. 27)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의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시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1989.3.31>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